

관련 조항	변경전	변경후	변경 내용
제 2-2조	신설	<p><b>제2-2조 예금수수료</b></p> <p>①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(음의 값)인 통화 예금의 경우, 은행은 예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동 수수료는 월평균 잔액이 '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' 이상인 경우, 월평균 잔액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.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수료율은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변경일부터 적용된다.</p> <p>② 전항의 수수료는 달리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원금에서 차감되며, 수수료 산정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수수료 차감 전 인출요청 또는 계좌해지시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과 인출요청액의 합이 예금잔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	마이너스 금리 통화에 대한 예금수수료 부과의 근거조항 신설